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087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근로자 단체”를 “노동자 단체”로 수정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근로자 단체”를 “노동자 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 (생략)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u>근로자단체</u> 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u>노동자단체</u> 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를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으로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생활임금은 매년”을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생략)</p> <p>③ (생략)</p> |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u>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u></p> <p>② (생략)</p> <p>③ <u>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u></p> <p>1. ~ 3. (생략)</p> <p>④ <u>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u></p> | <p>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u>최저임금법</u>」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u>----- --- <u>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u> ----- -----.</p> |